

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(제58조제2항 관련)

1. 인력

자격 능력	대체 가능 인력	
	대체 경력	전공연구분야
가.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	○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
나. 다음에 해당하는 자 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)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·수산양식 2)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관리 3)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	○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환경공학
다.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)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·수산양식 2)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	○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	해양학 수산학 환경학
라.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·경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	○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	경제학 수산학 지리학

1) 정보처리직무분야 중 정보처리		
2)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		

2. 장 비

명 칭	수 량
가.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분석장비 1)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-불꽃 이온화 집출기 2)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-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-질량 분석기 3)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(HPLC: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) 4) 형광분광분석기(Spectrofluormeter)	각 1대 이상
나.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 분석장비 1) 광학현미경(배율 1000배 이상) 2) 현광현미경 3) 해부현미경 4) 방사능 측정 계수기 5) 분광분석기(Spectrotomometer) 또는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(plate reader)	각 1대 이상

비고 :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또는 측정대행자와 해당 장비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